

『2002년 구미시 상수도사업지방채(차입금)발행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년 6월 14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6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6월 21일

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천 동 성

나. 제안이유

- 열악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로는 노후 수도관 개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지방채 차입으로 노후수도관을 조기에 개체 하여 관로 부식으로 인한 수질저하방지 및 출수불량지구 해소와 누수율을 낮추는 등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비 확보
 - 사업량 : L = 10.3 km
 - 사업비 : 1,484백만원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19조, 지방자치법 제11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완 진

○ 본 동의안은 노후 된 상수도관을 개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행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임.

○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래에 상환을 조건으로 주민, 금융기관, 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하는데,

○ 본 발행안은 환경부 재특자금을 연리 4.5%(정부지원 2.25%, 자체부담 2.25%)로 1,484백만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2001년말 구미시 지방채 상환잔액은 130,120백만원으로 채무비율은 29.4%이고 2015년까지 상환계획이며, 채무상환비율은 3.99%로서 정부 통제 기준치인 20%에는 많이 미달하며, 지방채 원리금 상환 연체도 없는 상황임.

○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노후 상수도관 개체와 같은 내구적 공공재의 시설 비용을 모두 지방세로 충당한다면 과중한 재정압박은 물론 편익과 부담간에 대응성이 없어져 세대간 불공평이 발생할 것임.

○ 따라서 이러한 재정압박과 불공평은 지방채에 의한 자금조달로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조건의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